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 미 자 의원)

의안 번호	23-128
----------	--------

발의년월일 : 2023. 10. .

발의자 : 안미자,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신종갑, 차해영, 오옥자,
이한동, 장정희, 최은하, 한선미

1. 제정이유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2조)

-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부대장 운행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안 제3조)

-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관계법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전문개정 2014. 1. 16.]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9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 9. 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전문개정 2014. 1. 16.]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별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 나. 전투시설의 지원
 -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 나. 작전 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안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소요예산 : 연 137,700천원(전액구비)
- 306대 × 450천원 = 137,700천원
- 연간 훈련일수: 51일
- 훈련 연인원: 18,111명 · 1일 평균 훈련인원: 355명
- 차량 탑승인원: 213명(355명×60%) ※ 자차 이용인원 제외
- 일일평균 배차: 6대(213명/40명) · 연간 배차소요: 306대(6대×51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임차비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소계(b)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 총 비용(a-b)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자체 수입	소계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지방세수입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합계		137,700	137,700	137,700	137,700	137,700	688,500

5. 덧붙이는 의견

- 마포구 예비군 훈련 연인원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가정 하 추계책임
- 시행된 이후 차량 신청률 및 이용률, 인구변화 그리고 차량 임차비 물가변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반영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박혜리
연 락 처	02-3153-8205